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두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1
----------	------

발의연월일 : 2016년 2월 18일

발 의 자 : 진두생, 김광수(노원),
김용석(서초), 김제리,
남창진, 서윤기, 우창윤,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주찬식 의원(11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은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계약 심의에서 수탁기관이 부적정한 경우에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탁기간의 적정 여부 판단시기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수탁기간

의 적정 여부 판단시기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함(안 제4
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의 “30일 전까지”를 “90일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판단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진두생 의원